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2. 28(금) 09: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30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 (2014-08-039)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 시행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방송의 공적가치를 지켜야 할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81년 이후 동결되고 광고수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참 공영방송의 실현이 퇴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영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진, 상업광고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공영방송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수지 전망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KBS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태에서 '14년~'18년까지 중기수지 전망을 분석하여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고, 수신료 조정 후의 수지 전망도 분석하여 수신료 조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 상태에서의 중기수지 전망입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없이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14년~'18년까지 총 4,715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리 위원회가 재산정한 결과 5년간 누적손실이 총 3,422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KBS가 제시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인건비 절감 등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KBS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신료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수신료 조정 후의 중기수지 전망입니다.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조정할 경우 '18년 누적이익이 7,000만원으로 추산되어 중기수지 균형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물론 이 계획에는 광고수입을 '12년 대비

연평균 2,100억원 축소하고 EBS 지원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며 수신료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재산정 결과 KBS 추정보다 총 2,100여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차액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확대 등에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구노력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KBS는 자구노력으로 인력감축, 사업경비 5% 절감, 콘텐츠 수입 확대 및 유희자산 매각을 통해 총 6,48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도 사업경비와 마찬가지로 5%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보유 자산 전반에 대한 활용도와 효용성을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자산 구조조정 계획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공적책무 확대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KBS는 공적책무 확대 방안으로 3대 방향, 10대 약속, 60개 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총 6,74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검토한 결과 방송 체험관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총 423억원을 제외한 6,324억원만을 공적책무 확대 추가소요 예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KBS 광고 축소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KBS는 수신료 조정 시 향후 5년간 광고수입을 연간 4,136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TV와 2라디오의 일부 시간대, 그리고 지역방송과 DMB는 전 시간대의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엄정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19년은 완전 공영방송 구축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바 이를 위해서는 '17년과 '18년 광고 추가 축소 및 완전폐지에 대비한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KBS의 광고축소 또는 폐지로 KBS와 결합판매되는 중소방송사의 광고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EBS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KBS는 수신료 조정시 EBS의 지원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EBS는 15%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EBS의 공적재원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투자 등 공적 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지원 비율이 7%까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EBS 역시 수신료를 통한 공적 재원 확충에 상응하는 경영혁신 노력을 해야 하며, 어린이·유아 대상 광고는 축소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신료 관련 정책 검토입니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와 광고 등의 재원을 회계상 분리하고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수신료 산정 절차의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셋째, KBS는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KBS 일부 이사들이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또한 국회에서도 KBS의 지배구조 등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적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KBS가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고품질 콘텐츠를 통한 방송문화 발전 및 한류의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 조정은 국민의 부담이 전제되는 만큼 KBS는 자구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품격 방송서비스 제공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가 KBS의 중기수지를 재추정한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은 소외된 계

층에 대한 수신료 면제 확대, EBS 지원 확대 등 광고 추가 감축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이 실현될 경우에 KBS가 제시한 광고축소 계획 및 공적 책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에 KBS의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제가 검토를 관여해서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KBS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KBS와 몇 차례 자료를 주고받고 사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쓴 소리를 많이 하고 굉장히 아픈 주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고, 또 앞으로 K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잘 명심해서 이번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된 그런 사안으로 인식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성실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내용만 살펴봅시다. 저는 오늘 광고 쪽만 집중적으로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광고 쪽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페이지 보면 광고수입을 '12년 대비 연평균 2,100억원을 축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번 수신료 인상이 1,500원 인상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현재 2,500원에서 KBS 수신료 총액이 5,600억원 정도 됩니까? 2,500원 걷는 매년 KBS 수신

료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약 '12년 대비로 해서는 6,000억원 정도 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6,000억원이면 500원에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500원에 1,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냥 산수하기 편하게 500원에 1,000억원이라고 치고 연평균 2,100억원을 축소하면 1,500원 올려서 1,000억원 남지요. 1,500원을 올렸는데 광고로 2,100억원을 빼면 1,500원이 아니라 500원 남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단순계산하면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단순계산해 봅시다. 500원 남지요? 그래서 수신료 인상의 효과를 KBS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광고 2,100억원을 빼면 500원 정도만 수신료 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를 보면 공적책무를 위해서 3대 방향, 10대 약속, 60개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KBS가 6,747억원을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산을 해 보니 5년 동안 6,324억원만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5년 동안이면 1년에 1,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광고 2,100억원 빼고, 또 공적책무 1,500억원 빼면 3,600억원이 빠지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1,500원 인상해서 정확하게 3,600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신료 총액에 3,600억원이 플러스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6,000억원 정도 하니까 4,000원으로 올리면 9,600억원 정도 되는데 즉, 1,500원을 올려서 KBS가 거둬들이는 돈에 플러스 효과가 3,600억원이 되는데 광고 2,100

억원 빼고 그다음에 공적책무로 1,500억원 더 빼면 KBS는 무엇이 남지요? 이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을 인상하게 되고 공적책무 계획을 KBS가 제시한 안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으로 재조정할 경우 3,600억원까지는 아니고 2,1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 광고가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얼마가 남느냐는 문제보다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광고 비중이 얼마, 그 문제를 떠나서 종국적으로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를 줄여 나가야 하는 전제 하에서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광고를 줄이거나 광고를 없앤다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1년에 2,100억원에 기존 전년도 대비 2,100억원의 광고를 축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연평균 1,500억원 이상의 공적책무를 수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3,600억원의 기본적인 KBS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500원을 인상하면 3,600억원의 수신료 수입이 더 들어 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아닙니까? 그러면 KBS는 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이렇게 뛰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보내준 1,500원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이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수신료 논의를 한단 말입니까? 이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전제부터가...

○ 양문석 상임위원

- 전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제를 다 털어내고 1,500원을 인상해서 KBS 보고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1,500원을 주는데 1,000원은 광고 축소로 빠지고 500원은 공적책무라고 해서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빠져 버리면 무엇이 남느냐고요? 이것을 설명해야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인상안을 검토할 때 공적책무 부분은 콘텐츠 제작능력에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EBS에 대한 지원비율이 현재 3%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7%까지 올리도록 한 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폭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 부담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상응하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간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KBS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계속 제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함은 학자마다 다 다르고 자신이 처한 입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BBC와 NHK가 똑같은 운영방식과 똑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KBS 또한 한국에서 시작해서 지난 80년 동안 KBS가 만들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토양 속에서 KBS가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한국 고유의, 특유의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구축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롤모델은 무엇이다, 이상향이 무엇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압하고 강요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3,600억원이라는 공적채무 플러스 광고 축소에 대한 부분을 온통 1,500원을 올려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두 번째 국장님 말씀대로 공적채무의 콘텐츠 질의 향상에 6,324억원에서 얼마 배정해 놓았습니까? 과장!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전체적으로 지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냥, 제가 질문한 것만 답해 보십시오. 방금 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채무 6,324억원에서 단말기 보급사업 50억원, 그다음에 디지털 라디오 송신 구축사업 150억원 등 해서 공적채무 요소를 정했는데, 콘텐츠 진흥 또는 콘텐츠 고급화의 공적채무 6,324억원에서 공적채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작비와 공적채무와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직접적으로 콘텐츠 제작비로 KBS에서 제출한 금액은 약 3,000억원이 넘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 말고 공적채무 6,324억원에서….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 공적채무 사업으로 들어온 것 중에 콘텐츠 제작비, 순수하게 프로그램 제작비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것은 정확하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만 3,000억원 이상이 되고, 그리고 6,000억원 중에 실제로 UHD-TV, MMS 등 결국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스마트 플랫폼 단말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알았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공적채무 확대사업은 사실상 다른 데에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KBS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KBS 프로그램 제작에 뒷받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 간다고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작비 확보방안에 3,00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제작 콘텐츠에 쏟아 부어질 수 있는 돈이 한 3,00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실제로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의 차이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과장 이야기를 100% 수용한다고 치고 천번 만번 양보해서 5년 동안 6,300억원, 연간 1,200억원, 그렇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그러면 500원 인상하면 이 공적책무 다 하는 것이지요? 국장, 그렇지요? 500원 인상하면 5년 동안 6,324억원 되지요? 아니, 대답만 해 보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단순한 수치의 계산보다도 전체적인 재원의 구조 부분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500원 인상하면 5년 동안 6,324억원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다 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런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적책무 부분에 6,300억원 외에도...

○ 양문석 상임위원

- 어떤 이야기를 해도 궁색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5년 동안 1조원을 뺏니다. 광고 1조원을 5년 동안 빼고, 그런데 500원 인상만 하면 될 것을 왜... 그러면 공적책무에 대해서 백번 천번 양보해서 500원 인상하면 될 것을 왜 1,500원을 인상하지요?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있어서 수지만 보고 우리가 수신료 수준을 보는 것보다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가야 할 지향점을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공적채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광고수입의 운영보다 바람직하고 세계 우수방송이 그렇게 간다는 측면에서 과연 말씀하신 바와 같이 6,300억원만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말씀이 가능하지만 관점은 좀 달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모든 정책은 양면이 있지요. 그 그림의 결과, 좋다 그렇게 동의한다고 칩시다. 누가 혜택을 보지요? KBS가 혜택을 봅니까? 5년 동안 1조 이상의 광고를 빼는데 말 그대로 KBS가 죽자 살자 뛰어서 수신료 인상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혜택은 누가 보지요? 그것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누가 혜택을 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혜택을 누가 보냐고요?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십시오. 국장님 이야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혜택은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보다 더 많은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제가 봤을 경우에는….

○ 양문석 상임위원

- 수신료를 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몇 개의 민영방송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글썄요.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다 좋은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그것을 보는 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물론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부담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 홍성규 상임위원

-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2,100억원, 1,500억원 가지고 이야기가 있

있는데 무엇이나? 광고를 왜 줄여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나고 했는데, 결국 남는 것이 공영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위 공영방송 KBS로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것이고….

○ 김충식 부위원장

- 예, 좋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혜택이 바로 공영성 강화를 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철학의 문제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되고 나아 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공영성 강화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셨는데 국장! 지금 30 수년째 KBS 수신료가 오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KBS 내부적으로도 수신료 인상안을 낸 것이 2007년,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제기하는 KBS 입장에서 요구가 없었다고 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요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공영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수신료를 올려줄 가치가 없다는 부분이 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가 매년 오르고 경상비가 오르는데 왜 KBS가 20 수년이 지난 2007년에야 그런 논의를 하고, 그리고 2014년에야 이런 안을 또 절박하게 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KBS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공영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 또 국회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국민 부담에 대한 준조세적인 부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자체 구조조정 노력, 경비절감, 또 회계분리 등 해야 할 기본적인 자기혁신 노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된 안 물론 국회로 가지만, 가기 이전에 그동안 공영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30년 동안 논의해 온,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변전하면서 집권주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어서 결론이 된 내용, 'KBS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소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집권 치하에서도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이것은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논의의 기본축은 결론이 됐든 서론이 됐든 어느 부분에 반영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KBS 소수 이사들이 주장한 것도 있고 다수 이사들이 반론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광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컨대 KBS2가 꺼안고 있는 군소방송이 4개가 있지요? 양 과장, 무엇 무엇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라디오 종교방송 일부와 지역...

○ 양문석 상임위원

- EBS 포함해서 라디오 4개, EBS 하나 해서 5개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예컨대 지금 KBS2에서 빠지는 광고액 연 2,100억원이 다른 방송에 흘러간다고 할 때 양 과장, 舊 방송위원회 때부터 전문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100억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타 방송에 흘러갑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타 방송사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흘러 들어갈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광고주들이 얼마나 추가로 KBS에서 빠진 광고를 다른 방송사에 할까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마다 예측이 달라서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힘듭니다. 일부는 더 이상 광고하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예측하기 힘듭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맞습니다. 내가 대기업 광고 배분하는 임원 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2,100억원이 통째로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송으로 가지 않고 다른 인터넷 같은 광고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영업비로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2019년에 광고가 제로가 되면 지금 KBS가 겨안고 있는 군소방송 EBS 포함 5개는 논리적으로 누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KBS가 낸 안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준비해서 낸 안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500원 인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지금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현재의 미디어랩 체제, 지상파에 있어서 미디어크리에이트와 KOBACO 2개 체제를 만드는데 상당히 18대 때 열심히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KBS가 5년 동안 1조 이상의 광고를 빼고 그리고 '19년 이후에 광고가 없는 방송으로 전환을 하면 현재의 미디어랩 체제는 5년 뒤에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장 내년부터 EBS와 불교방송을 비롯한 5개의 군소방송사는 직접적인 경영에 타격이 옵니다. EBS 7% 올려줬다고 따뜻하게 우아하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MBC와 SBS한테 던져야지요. MBC와 SBS한테 이것을 다 없애주어야 합니다. MBC, SBS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광고총액 2,100억원을 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 광고제도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뒤에 파괴적인 효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생각 없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 없습니까? 이 이후에 바뀌어야 하는 것이 결합고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바뀌어야 하고, KOBACO 존폐 여부, KOBACO법 개정 그리고 오늘 안건에도 있지만 민영방송 종합편성채널한테 미디어랩을 주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왜 미디어랩이 더 필요하지? 1사 1랩 체제로 전체적으로 가면 그것이 광고국이나 미디어랩이나 똑같이라는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까지 가야 하는데 아주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관련된 정책을 같이 볼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송시장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 마련이나 전체적인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특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광고 부분의 문제도 추후에 계속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최소한 광고 문제가 결국은 먹거리의 문제이고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인데 여기에 대해서 덤프(dump)로 퍼내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서 하자, 그러면 최소한 2,100억원을 축소하겠다고 했었을 때 모범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시행령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제도인 KOBACO는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KOBACO 체제에 의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EBS나 불교방송이나 그다음에 MBC, SBS 포함해서 라디오 7개, 그다음에 지역MBC 18개 근 30여개의 방송사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방송사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라는 최소한 영향평가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영향평가 하나 없이 덜컥 2,100억원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지금 방송정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 양문석 상임위원

- 수신료 하나 해 놓고 이것이 다 해결됩니까? 이것이 아주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송 정책이 이 모양이야!

○ 홍성규 상임위원

- 잠깐만요. 지금 정 국장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수십 년째 왜 수신료 인상을 하지 않다가 2007년 그때 와서 부족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 전까지는 수신료 부분을 국회에서 언급하지 않았 습니다. 그전까지는 제도적으로 정부 내에서 수신료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안 올렸느냐 하면 수신료 징수제도가 전 기요금과 연계되면서 전보다 수신료 걷히는율이 훨씬 높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 물가인상이나 물가부담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요구는 쪽 있어 왔으나 그런 저런 이유로 정부에서 수신료 인상을 적극 억제했던 것입니다. 2003년 이후에는 이 논의가 국회로 넘어오지요.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 어떤 정당 여야가 바뀌면서 또 입장이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발전이 없었느냐, 저는 있 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공정성 문제 언급하시면서 지배구

조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수신료 안을 넘기면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의 역사성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법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미디어법안을 고쳐서 새로운 KOBACO 체제로 갈 때도 사실 그때 국회에서도 현재의 KOBACO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체제가 바뀔 때 KBS가 좀 더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줄이거나 또는 없애거나 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체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가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물가 인상만으로 치더라도 2,500원이 일거에 4,000원이 되는 것은 정부 행정기관으로서 그것을 용인하기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가지 진전된 내용이 방통위에서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야당에서 법안으로 낸 것을 어느 정도 반영했고, 또 수십 년 동안 KBS가 외면하고 또 버텨오던 수신료회계와 광고회계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KBS 측에서 답변을 했고, 방통위에서도 그것을 정책과제로 못을 박았다는 측면에서 진전도 있습니다. 또 공영성·공정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논의를 국회에 촉구하는 측면도 담기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은 미흡합니다. 양 과장, 지금 이 안이 넘어온 것이 12월 12일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얼마나 된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기획과장

- 물리적인 시간은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결론에 적시한 것처럼, 여섯 번째 페이지의 KBS 조정안은 '적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전제한 것처럼 아직도 다듬어야 할 대목이 있어서 이 자체로 국회에 보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에도 KBS가 4,000원을 가지고 온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방법이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행 상태에서 재정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짚어본 것이고, 그렇게 따져 봤을 때 그리고 KBS가 미흡한 부분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

에 그것을 더 세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까지 투입해서 집어넣어봤지만 어차피 적자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신료라는 것은 인상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의 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 인상폭에 대해 정치적으로 논의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대의 절대선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KBS가 가지고 온 안을 존중해서 그렇게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자구노력을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경비, 중복된 경비 빼고 나서 이 돈을 최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광고에 대해서, 그다음에 KOBACO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수신료 인상(안)에서 광고 2,100억원을 어디로 돌렸다고 해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방송환경의 변화는 뉴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고민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그런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국회에 가셔도 좀 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그런 선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충분히 동감합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질 좋은 콘텐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KBS 수신료를 접근했다면 저는 1,500원이든 2,500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낸 만큼, 또는 낸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일관되게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들을 정권과 관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한류니 뭐니 하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자체가 국내로는 국내 시청자들에게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검증받은 콘텐츠가 해외로 나가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고가에 팔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출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콘셉트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KBS의 콘텐츠 제작비를 강화시켜 주는, 그러한 측면으로 수신료 인상 논의가 갖어야 한다, 만약에 저는 아주 심플하게 KBS 광고 2,100억원 안 빼고 그대로 3,600억원을 플러스알파해서 현재 수신료 수입총액이 6,000억원 정도 되는데 9,600억원 정도로 만들어 주자면 현재까지 논의됐던 많은 정책적 쟁점이 상당 부분 이 안에서 해결되고 녹아있기 때문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KBS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방송환경이 안 좋다고 수신료를 가지고 다른 민영방송이나 다른 매체사를 먹여 살리는 보이지 아주 못된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정확히 하려면 광고 빼지 말고 9,600억원 KBS와 EBS가 말 그대로 공영성 강화를 위해 그대로 써라, 그리고 방송광고 환경이 안 좋고 방송경영 환경이 안 좋으면 지역신문발전법처럼 일반회계로 다른 민영방송을 지원하라는 부분입니다. 왜 수신료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런 정책의 기초를 가져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또 하나 반대하는 이유는 광고를 뺐었을 때 이후에 우리나라 50여개의 지상파 방송사가 가질 수 있는 타격들, 그다음에 한국 방송정책에 있어서 몇 안 되는 해외

수출품이라고 이야기해 왔던 KOBACO 체제의 해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평가를 하고 이후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대책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신료의 진정성이 없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그리고 사무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수신료 인상은 KBS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들여다보면 그동안 수신료 논쟁은 수년간 쪽 있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르다고 보는 것이 부위원장님과 양문석 위원을 포함해서 KBS 안에 있는 야당추천 위원들, 이분들도 그 논의 때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주장한 것들이 있었습디만 그런 분들 이야기, 또 정치권 이렇게 해서 야권의 의견들이 대폭 수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3가지를 보는데 사실 KBS 입장에서 보면 회계분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또 수신료산정위원회 문제도 들어있고, 또 공영성 강화라든지 또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도 촉구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폭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영성에 관한 논쟁은 꾸준히 있습니다만 이런 수신료 인상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그런 공영방송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방송 전체적인 지형에 커다란 개혁과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BBC가 가지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는 BBC를 영국의 7대 자랑거리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국 국민들이 자부감을 가지고 있지요. 또 일본의 NHK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면 임산부들은 그동안 보던 다른 방송채널에서 전부 NHK로 하나 같이 채널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 이것을 위해서 이런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렇게 가자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의가 끝없이 계속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홍성규 위원께서 NHK 방송을 임산부들이 듣게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NHK가 국수주의적인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공영방송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송이어야 한다, 그러한 공영성 강화, 또 하나는 아까 양문석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한류가 추락상태에 있다, 이것을 재가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신료를 우리가 조정하면서 KBS가 콘텐츠 진흥에 대해서 가져온 액수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업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이 국가 전체에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는, 지금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0년 전에 38%를 차지했던 지상파 광고 수준이 20%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어떤 관념적인 논쟁보다도 현실적으로 수신료 조정을 통해서 KBS 자체가 국민의 뜻에 맞게끔 변화하도록 하는 유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두 야측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경청하면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는 지적을 다 보냈습니다. 하여튼 논쟁이 끝없이 진행될 테니까 이 정도 토론을 그치고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님, 찬반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대희 상임위원

- 예, 저는 찬성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김충식 부위원장님!

○ 김충식 부위원장

- 반대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양문석 위원님!

○ 양문석 상임위원

- 반대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홍성규 위원님!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찬성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분이 제기했듯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 단계에서 이것은 매듭을 지어야 방송 전체에 또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을 갖는 측면에서 3:2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반대토론을 거쳐서 이 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붙임>자료에 보면 서론에 제일 강조된 것 중의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상파광고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10년 동안 30%에서 20%로 줄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중심으로 이끌어졌던 한류의 추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을 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상파 콘텐츠 제작 기반을 확충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국회로 넘기지만 국회 상황을 한 번 들여다보면 어차피 2월 국회는 오늘 끝나니까 이 논의가 될 것 같지 않고, 또 6월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볼 때 결국 수신료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사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KBS를 포함한 지상파 입장에서 보면 계속 콘텐츠 제작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KBS가 소위 대하드라마를 쪽 이어서 만들어 오다가 한 6개월 이상 대하드라마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도전이라는 대하드라마를 만드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드라마들을 상당 기간 못 만들었느냐,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MBC의 경우 <대장금 2>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까지 굉장히 그런 욕구가 있는데, 작가나 또는 출연진들을 겨우 설득해서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재정적인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상파 콘텐츠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도 물론이지만 중간광고 또는 광고총량제, 아니면 간접광고의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산업기반 확충을 도와줄 수 있어야만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이 문화냐, 산업이냐에 관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 적어도 콘텐츠 산업의 기반 확충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2기 위원회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새로 구성되는 제3기 위원회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중간광고 문제, 광고총량제 문제 또는 간접광고의 규제완화 문제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콘텐츠 산업 기반 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고 아주 면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2014-08-040)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제이미디어랩, 미디어랩에이, 조선미디어랩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한다. 위 3개 법인이 허가 신청서류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여부 확인 후 허가장을 교부하되,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한다. 첫 번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

는 행위, 방송광고 판매시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PP와 그리하지 아니한 PP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두 번째 조건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 번째, 광고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네 번째,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간 공동 수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최초 허가이므로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렐법) 제7조에 따라 허가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한 제이미디어렐, 미디어렐에이, 조선미디어렐 등 3개 법인의 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요건 심사는 종편PP 미디어렐 허가 신청법인 중 미디어렐법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소유제한 등)에 위반되는 부적격 신청법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량·비계량 평가의 경우 3사 모두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은 각각 80.885점, 74.010점, 75.700점을 획득하여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심사위원회 건의내용으로 방송광고판매의 공정성, 공익성 확보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에 대해 사업자간 통합 수행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미디어렐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3개 법인을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및 기존 지상파 미디어렐 허가 사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허가조건은 의결주문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허가 대상법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허가장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허가장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허가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4쪽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경영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에 '경영독립성 보장'이 어떤 의미지요?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에 최대출자 주주인 종편의 임원들이 미디어렐

의 이사를 하는 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허가조건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자본금은 그렇다 치고 인적 구성은 대체로 해당 신문사를 모태로 해서 종편 광고영업을 하던 사람이 흘러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기존에 있던 광고국의 광고 관련된 임원들이 미디어랩으로 인원이 많이 이동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디어랩법에 따라 직할영업을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해 도리 없이 종편사별 랩을 만든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물론 이런 형식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광고시장, 그리고 종편의 매출구조, 그리고 경영여건의 악화 이런 것이 방송편성이나 보도, 제작에 여하한 악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랩 자체는 단순한 영업행위로서 법인의 매출이나 수익만 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방통위가 관심을 가지고 또 존재의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광고매출로 생기는 보도의 악영향이나 사회 여론의 왜곡, 다양성에 대한 침해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과제들을 특별히 방송기반국장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심사위원님들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허가조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조건이 잘 이행되는지 실무적으로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오래간만에 3:2에 맥없이 또 무릎을 꿇었는데 언젠가는 저도 3에 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꼭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진짜 꼭 하고 싶습니다. 국장, 방송에서 홍보성 광고가 무엇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 홍보가 어떤 홍보냐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최근에 광고판에서는 홍보성 광고라 함은 돈을 주고 광고는 안 내는, 그것이 홍보성 광고입니다. 보험성 광고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A회사가 B사한테 광고 좀 주라고 하면 1,000만원만 줘도 될 것을 그 1,000만원짜리 광고를 하고 나면 다른 방송사들이 '저기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는데?' 해서 우두둑 와서 난타를 해서 또 1,000만원씩 다 빼기기 때문에 그냥 살짝 돈만 주고 광고를 안 하는 것이 홍보성 광고입니다. 그것이 현재 종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홍보성 광고입니다. 그다음에 대포광고라고 아십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잘 모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대포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방송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광고해 놓고 '우리 광고 틀었으니까 돈 내라'라고 하는 것이 대포광고입니다. 현재 KOBACO나 미디어크리에이티브 체제에서 정상적인 광고는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건 중에 방송광고판매에 관한 공정거래와 관련한 내용들이 미디어랩법에 있는 것 빼고 없지요? 지금 조건 <1>번이 법안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문제는 이 법안 가지고 조건을 없애놓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진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 중에 종편미디어랩으로부터 공정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라고 하고 그 이행계획을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 6개월 반기별로 하든 점검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불공정 광고판매행위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업자들이든 그다음에 매체사든 이제는 프로그램의 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종편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종편 4사한테 기업들이 n분의 1, 4분의 1로 100만원을 책정해 놓고 25만원씩 다 떼어주는 이러한 형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면 이제는 프로그램별로 광고를 제대로 팔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도 제대로 되어야겠고, 그것도 시한을 정해서 전산시스템 완료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고의 정상적인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종편도 프로그램별로 광고를 판매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건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심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드리면 전산시스템 구축이 바로 프로그램별로 광고를 판매하기 위해서...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은 조건에 있고...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조건에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전산시스템의 조기 확보는 시기를 정해 놓고 가야 합니다. 시간을 질질... 왜냐하면 프로그램별로 안 팔고 멍멍멍 홍보성, 대포, 그다음에 정상 프로그램 거래 이 3개가 짬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먼저 정리해서 대포 못 하고 홍보성 못 하고 프로그램 광고만 하는 방송사는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조기 완료는 명확하게 시점을 박아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행계획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의 조건입니까?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앞에 하나 더 붙여서 방송광고판매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보 이행계획을 받아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조건을 저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센터를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정책과에서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누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계속 신고를 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행계획들에 대해서 점검해서 2개를 같이 봐야 정확하게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말씀 드리면 저희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느 정도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또 미디어랩을 매년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우려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신고센터는 반드시 준비하시고 회계감사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회계감사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하면 분식회계입니다. 홍보성광고와 대포광고는 정상적인 수입에서 안 잡힙니다. 광고수입이기는 광고수입인데 정상적인 광고수입에는 안 잡힙니다. 내가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기업에서 광고라고 해서 돈을 줬습니다. 보험성 광고는 안 잡힙니다. 그다음에 대포광고도 안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광고제도 자체가 회계감사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블랙마켓(black market)이 있습니다. 이 블랙마켓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보고 관찰해서 잡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홍보성광고와 대포광고를 근절해야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된다, 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행계획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점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점검과정에 있어서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것과 그다음에 직접 나가서 보는 것과 대조해 보고 하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조건에, 저는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제기합니다. 조건 하나에 방송광고판매 공정거래 질서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넣지 않으면 이것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상파와 유료방

송 간에 있어서 지상파는 유리 지압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지상파 그 자체가 공정성이 안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편끼리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가는데 프로그램 잘 안 만들고 왜 A사는 주면서 B사는 안 주냐고 약탈적으로 광고를 빼앗아 오는 약탈적 영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판매 공정거래 질서 확보 이행계획을 받아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산시스템을 KOBACO 것을 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KOBACO 관련된 KODEX System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다만, 1개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KOBACO 것을...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것으로...

○ **홍성규 상임위원**

- 벤치마킹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이 언제쯤까지 될 것 같습니까?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2개사 정도는 거의 다 개발이 끝났고 1개사가 진행 중인데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KOBACO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까?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해서 쓰는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반드시 개발되어서 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질문한 것에도 대답해 주세요. '이것 놓자'라고 제기했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법적으로, 연임한 분이 다시 또 상임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장내 웃음)
- **이경재 위원장**
 - 양문석 위원님 지적 상당히 경청할만합니다. 미디어랩법 만들 때 직접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저도 늘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공정거래가 되고 광고에 의해서 방송내용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철저히 반영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원안대호가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조건이 1, 2, 3, 4가 있는데 하나를 더 붙여서 제대로 워딩을 그대로 하면 '방송광고판매 공정거래 질서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하고 <2>번 하고 드르륵 같이 붙여주는,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이경재 위원장**
 - 그 부분은 반영하고 원안대로...
- **양문석 상임위원**
 - 원안 더하기 그 부분 반영...
- **이경재 위원장**
 -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4-08-041)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종편PP의 방송광고 수수료율을 규정한 미디어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9일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내부 규제심사, 그리고 2월 2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대면심사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대면심사 시에 참고표시 보시면 종편미디어랩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향후 미디어랩 시장의 운영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검토행 일몰규제(3년)”로 설정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 내용대로 종편PP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개선하는 근거 규정을 제24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4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향후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3월 초에 법제처 심사, 그리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에 공포·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비 수정안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붙여온 의견이 3년 한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매 3년마다 방통위에서 정한 수탁 수수료율이 그 당시 현재 시장상황에서 적절한지를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매 3년마다 계속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그것이 종편PP에 대한 수탁 수수료율만이 아니고 그 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파와 지상파 DMB까지도 다 같이….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총리실에서 제안한 것은 종편 미디어랩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제안했는데 다른 것은 검토하지 않고 종편랩의 수수료만 검토하는 것이 이상해서 저희는 3년마다 미디어랩을 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4-08-04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공보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제정(안)의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규 구역 확정입니다. 종전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를 신규 방송구역으로 확정합니다. 다만, 세종시를 신규 방송구역으로 확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송구역으로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구역 조정건은 행정구역 통폐합, 승격 등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종합유선방송구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간 경계변경을 방송구역에 반영할 경우 가입자 수 등이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불리해지는 면이 있어 경계변경이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고시 제정(안)은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사전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을 변경해도 불구하고 방송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일부 지역 시청자들의 지역채

널 시청에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구역 방송사업자가 변경된 행정구역의 지역방송 프로그램도 편성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미래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사전동의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중 마지막에 변경구역을 하다 보면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데 방송구역에서 보통 행정구역에 관련된 방송내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선거방송토론도 합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 편입이 되어서 자기 구역의 것을 못 듣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야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14-08-043)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중 방통위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미래부 소관사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 방통위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미래부에서 별도 규정 제정을 추진, 아마 오늘 완료될 것입니다. 완료됨에 따라 소관에 따른 주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1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고, 행정예고와 규제위 심사를 거쳤고,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종편·보도 PP사업자를 담당하되, KOBACO를 새로이 추가했으며, 미래부 소관인 SO, 일반PP, 위성, IPTV,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 보고사항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운영실태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 이경제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운영실태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방송광고 편성 허용범위(시간당 광고 편성시간) 준수 여부 등 방송광고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편성위반 여부를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등록 PP 중 시청률 상위 18개 채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13년 11월 22일~28일까지 일주일간 12시~24시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시간당 방송광고 편성시간 준수 여부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과태료 권한이 위탁되어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조사결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씨제이엔엠(주)의 5개 채널 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 이 5개 채널이 31회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씨유미디어의 드라맥스, 코미디TV 2개 채널에서 조사기간 동안 13회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KBS N에서 1개 채널에서 2회를 위반하였습니다. MBC드라마넷, KBS드라마, SBS Plus 등 10개 채널은 방송광고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송법시행령 제 68조를 근거로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준금액은 1,0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까지 1회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광고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 운영하여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획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에 대한 조치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 업무가 우리 업무이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법령 미비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법에 방통위에서 광고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법에서 다시 중앙전파관리소로 위탁했기 때문에 법적 미비사항은 아닙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과태료를 이 정도로 해라'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 권한 자체는 그쪽에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는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것이 저희가 그런 실무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 홍성규 상임위원
 - 옛날 방통위로 되어 있었으면 같은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져 있으니까 정말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업무인데 위탁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과태료를 정해서 이렇게 매기라고 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분리되기 전에는 방통위 내부에 있으니까 똑같은 것으로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법적 미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나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중앙전파관리소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작년까지는 모니터링도 중앙전과관리소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권한 문제나 기능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리고 조사한 것이 11월 중에 일주일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반된 것이 당초 맥시멈 한도 12분을 초과한 것이 22분까지 초과를 했으면 도대체 12분을 광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2분을 더 했으면 30분 넘게 시청자들은 광고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김대희 상임위원

-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금액이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이것 1,000만원 부과해서 이 사람들이 아픈 척이나 하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회당 1,000만이고 최대금액은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1회 위반인 경우에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억원이 되고, 그리고 최대금액 부과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다면 9억원 정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태료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반복적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일주간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위반건수를 곱해서 그 정도 나온다는데 사실은 방송광고라는 것이 하루 이틀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단위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벌써 이 사람들 3개월, 6개월치를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겨우 건수가 일주일 동안 조사한 것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런 지적이 옳으신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도둑 수만큼 많아야 꼭 치안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불시에 단속을 하고 어딘지 모르게 점검하고 허를 찌르는 것을 해야지, 이것도 제 생각에는 법규상에 물론 한계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불시에 또 점검을 나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위반되는 것을 가차 없이 처분해야 이런 일들이 근절되고, 정말 조금 넘어간 것도 아니고 2배, 3배 위반됐다는 것이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모니터링 요원이 13명이 더 늘었고 그런 보강된 인원을 통해서 보다 자주 명확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이 부분을 과거에 조사해서 과징금을 매긴 적이 있습니까?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이것은 일주일에 7회니까 7회에 관한 1회에 얼마해서 과징금을 매기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쪽 똑같이 해 온 것입니까? 그것을 잡아내면 엄청난 과징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는 처음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절반 이상을 광고하는 것 같다고 해서 조사해 보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 특히 특정회사가 위반이 제일 많고, 지상파 가운데에서는 하나가 조금 초과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해도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경고의 시발로 이것을 엄격히 하는 것은 아마도 다음에 광고해서 돈 버는 것보다 과징금이 더 많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오늘 명단 발표하십시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이경제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종합편성·보도전문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 유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4개 사업자와 뉴스Y 보도PP 1개 사업자에 대해서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입니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두 번째,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및 세 번째,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은 5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사업계획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십시오. 재방비율은 뉴스Y를 제외한 종편PP 4개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JTBC의 재방비율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 발전방안은 지역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체로 이행되었다고 봐집니다만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등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은 대체로 이행하였습니다만 채널A의 다문화가정 교육, MBN의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편성 등이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의 방송장비 국산화 등은 대체로 이행하였습니다만 R&D 실적은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은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실적이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입니다. 종편PP 4개사 모두 승인조건인 국내제작 프로그램 60% 이상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의 목표를 대체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치 방향입니다. 이행이 미흡한 항목 중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실적은 이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코자 합니다. 나머지 이행 미흡 항목들은 MBN을 제외한 4개 사업자의 승인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MBN은 승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행 미흡 항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후에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코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후에 TV조선·JTBC·채널A·뉴스Y에 대해서는 3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MBN에 대해서는 이행촉구를 한 후에 11월 재승인 심사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점검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중간에 재방비율이 JTBC가 제일 높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잘 봐야 할 것이 제가 알기로는 JTBC가 재방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JTBC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재방하려다 보니까 재방비율이 높고, 다른 사들은 예를 들어서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방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재방비율이 높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보도를 많이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자가 승인받을 시 조건을 제시했던 목표, 여기에서 보면 사업계획서상 JTBC는 재방비율을 16.9%를 하겠다고 했는데 62.2%를 했다는 그 면을 봤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종편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는 사 중의 하나가 JTBC이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다 보니까 재방비율이 많은 것으로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재방비율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시정명령을 했고 과징금 처분했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이런 수치만 가지고 볼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재승인 심사에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반영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지난 9월 의결해 주신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 또는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요컨대 2011년, 2012년도 것은 정리가 되어서 확정되어 있고, 방송평가가 안 된 2013년도분을 집계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심사위원단에게 넘겨서 종합적인 종편의 3년 실적에 대한 평가로서 참고하도록 넘긴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 홍성규 상임위원

- 위원장님, 큰 것은 아닌데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리다가 깜빡 잊었습니다. 정 국장, 수신료 부분 3페이지 제일 밑에 KBS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조정할 경우 18년 누적액이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7,000억원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7,000만원이 맞습니다. KBS가 추정을 할 때는 수지 균형을 맞추는 그 점수에 맞춰서 결국 2,500원을 4,000원으로 만들었다는 논리로 되어 있어서 7,000만원이 맞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나 해서….

○ 이경재 위원장

-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8차 방송통소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폐회】